#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0

발의연월일: 2020. 8. 6.

발 의 자:권인숙·오영환·이수진

신동근 · 윤미향 · 용혜인

아이전비 이 장섭 · 김진애

윤후덕 · 송옥주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대상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삭제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우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정보 전반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족 이외에 피해대상자의 대리인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 항 및 제2항).

#### 법률 제 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대상자"를 "지원 대상자(지원대상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형제자매"를 "형제자매(이하 이 항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정보(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 물등 또는 복제물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불법정보다만,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 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정보(이하 이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불법정보
- ②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대리인을 포함한 다)-----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형제자매(이하 이 항에서 "삭제 지원 요청자"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것으 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